

#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9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26.

발의자 : 소병훈 · 인재근 · 박홍근

박찬대 · 김정우 · 황주홍

박정 · 백재현 · 송석준

김철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용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2조제2항 신설).

##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「주택법」에 따른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주택의 우선 공급)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22조(주택의 우선 공급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「주택법」에 따른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.